

2

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(법 §4⑦, 영 §2⑧,⑨)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<u>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</u> 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규모 총량 예외 규정 정비(§4⑦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총량 적용 예외 단서 규정 삭제*</u> <p>* 총량 비율 내 조례 운영</p>
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재난대응 및 복구, 국가적 현안,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, 특구나 단지 지원 등*</u> <p>*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(영§2⑧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총량 별도 추가 대상 확대(영§2⑧,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+ '<u>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' 추가</u> <p>※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(영§2⑧,⑨)</p>

 개정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(§4⑦)

※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, 조례로 지방세 감면 규모(일정비율 5% 이내)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하며,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 중(영§2⑧)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*을 총량비율 별도 대상 추가(영§2⑧·⑨)

* 현행 대상에 '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'를 추가하여 행안부장관 협의 범위를 확대

※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(영§2⑧,⑨)

1) 영§2⑧5호 : ~ 제4호 ~ → 영§2⑧6호 : ~제5호 ~

2) 영§2⑨ : "법 제4조제7항 본문" → "법 제4조제7항"